

#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의 교양과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제정 1996.08.13.

개정 2004.11.01.

개정 2009.02.06.

개정 2012.02.01.

개정 2013.01.1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제24조 ⑥에 의하여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에 대한 교양과목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점인정신청)** 전문대학이상 졸업자가 본 대학 입학 전 다른 전문대학 및 대학교(이하 전적교라 부름)에서 취득한 교양과목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에 교양학점 인정허가원을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조(인정범위)**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.

1. 입학학과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 및 학점의 범위 이내
2. 평점 D(60점)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 및 학점
3. 2개 학기 이상 학점이 배점되어 있는 과목의 성적은 산술평균으로 계산한다.
4. 위와 같이 인정된 성적은 본 대학 학칙 제27조 ②항에 의거 적용한다.

**제4조(교과목 및 학점인정)**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1. 입학학과와 전적교의 교양과목이 동일한 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전적교에서 취득한 것을 100% 인정할 수 있다.
2. 입학학과와 전적교의 교양과목이 유사한 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<별표1>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다만, <별표1>에 포함되지 아니한 과목은 해당학과의 학과장과 학사운영처장이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3.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학점 배점이 입학학과의 학점과 차이가 있을 경우, 초과 학점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 개설된 학점으로만 인정되며, 입학학과 개설 학점수에 미달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
4. 위와 같이 인정된 학점은 해당학기 종료와 동시에 인정한다.

**제5조(학점중복신청의 금지)** 인정 받은 교양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.

**제6조(인정학점 취소 및 포기)** 인정 받은 교양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착오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없다.

**제7조(인정학점에 따른 수업료등의 문제)**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의 교양과목 학점인정의 취지는 입학학과의 전공과목 학습기회의 제공 등에 있는 바, 교양과목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수업료등 일체의 납부금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 이전에 학점인정허가원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교양학점등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교양학점 인정 허가원

결 재	담당	팀장	처장	총장
			전 결	

학과명	학 년	학 번	성 명
(주간/야간)			

위 본인은 20\_\_학년도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교양학점을 인정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학수구분	교양 과목명	학점수	성적	등급	비고
신청 학점 총계					

본 대학 학칙 제24조 ⑥항 및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의 교양과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 학생의 교양학점 인정허가원에 명기된 학점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서류: 성적 증명서 1부.

20\_\_년 \_\_월 \_\_일

신 청 인: \_\_\_\_\_ (인)

지도교수: \_\_\_\_\_ (인)

학 과 장: \_\_\_\_\_ (인)

순천제일대학교 총장 귀하